

충북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 운영시행지침

제정 2019. 12. 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북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양성평등 구현과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 다.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라.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행위를 말한다.
3.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인"이란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당사자"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8. "참고인"이란 사건 조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2차 피해"란 동 지침 제15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10. "대학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수, 강사,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부서를 포함하여 양성평등상담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교에 재직 중인 모든 교직원(총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포함) 및 학생(휴학생, 교환학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양성평등상담소장의 책무) ① 양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상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총장의 관리·감독 강화) ① 총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구성) 상담소는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전문요원 등) ① 상담소는 전문상담사를 두어 제8조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

② 상담소의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남성 및 여성이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소 전문상담사 1인과 교직원 중 1인이 겸직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 구제
2.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이에 대한 상담 및 기록
3.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결과 고충심의위원회 보고 및 조사 요구
4.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6.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사이버 신고센터) 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상담소장은 매년 연초에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장은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교육은 전문가의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각 연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구현에 대한 내용
2.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3.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대처방안 및 조치기준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
5.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6. 그 밖에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대한 사항 등

④ 상담소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 연도에 실시한 양성평등에 대한 상담 현황 및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의 시기 및 방법, 참석자 현황, 내용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8조 상담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8조 고충상담창구 업무와 제9조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신고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⑧ 상담소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상담소에 이관해야 한다.

⑨ 학생회 및 학생동아리 등에서 신고를 인지하고 접수 조사한 때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상담소에 통보하고, 1차 접수한 문서 및 진행내용과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 공유하며 상담소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성희롱·성폭력의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상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상담소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하지 않는다.

제14조(신고의 각하) ① 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13조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3조제7항 또는 제10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상담소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상담소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장은 피해자 등과 당사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상담소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담소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상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총장 추천자 2명, 교수회 추천자 2명, 직원회 추천자 2명 및 총학생회

추천자 2명(이하 "학생위원"이라 한다), 외부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직 위원은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의 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되면 새로 지명되는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대한 사항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 신청이 고충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와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성적 수치심, 모욕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전문가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조사 과정에서 위원장은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줄 수 있다.

제20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2조(신고의 기각) ① 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① 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②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취한다.

1.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2. 피해자의 민·형사상 구제에 필요한 지원 조치
 3. 가해자에게 공개 또는 서면사과, 봉사 명령, 재발방지 교육, 배상 등의 조치
 4. 가해자의 사건 은폐 또는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요구
 5. 가해자가 허위진술하거나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 요구
 6. 그 밖의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 ③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며,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로 취급되었던 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관계부서는 징계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상담소에 통보해야 한다.

제25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사건의 조사 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26조(불복) 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서 재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상담소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

력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부서와 구성원은 상담소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